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04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염태영·안태준·정준호
전현희·이학영·김준혁
김동아·김문수·조승래
이해식·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구조내력”을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2. ----------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